Brookfield Infrastructure Debt Fund III 투자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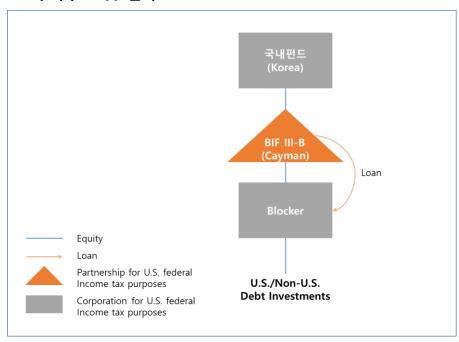
세무검토보고서

2022. 4. 21.



A. 본건 투자의 개요¹

I. 투자구조 및 절차



1. 투자구조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제2호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국내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펀드는 케이만제도 법률에 따라 유한책임조합 (exempted limited partnership)의 형태로 설립하는 Brookfield Infrastructure Debt Fund III-B,L.P.(이하 "본건 역외펀드")를 통하여 투자(이하 "본건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step plan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의 box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¹ 이하의 내용 중 해외 세무효과는 관련 해외법에 대한 저희 사무소의 독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며, 본건 역외펀드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i) 2022년 2월자 Confidential Private Placement Memorandum 및 (ii) 2022년 2월자 US Federal Income Tax Overview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미국 연 방세 이외의 주세(state tax) 등에 대한 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투자 절차

설립 단계	① 귀사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국내펀드를 설정할 예정임.											
	② 국내펀드는 본건 역외펀드가 발행하는 수익증권(limited partnership interests)을 취득함.											
	③ 본건 역외펀드는 미국 및 기타 투자지국에 소재한 인프라 관련 자산(이하 "Target")에 대한 대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임.											
이익 회수 단계	④ 본건 역외펀드는 Target으로부터 이자, 배당소득 등을 수취함.(*1)											
	⑤ 국내펀드는 본건 역외펀드로부터 분배금(이하 "본건 소득")을 수취함.											
	(*1) 미국 투자와 관련하여 primary 대출 투자 등 ECI(이하 정의)가 발생하는 투자는 본건 역외펀드가 미국 세법상 corporation으로 설립											
	한 법인(이하 "US Blocker")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게 되며, 추후 US Blocker는 동 소득을 배당의 형태로 본건 역외펀드에게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본건 역외펀드는 US Blocker에 대하여 별도의 shareholder debt 투자 역시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와 관련하여 US Blocker는 본건 역외펀드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본건 역외펀드는 미국에서 ECI로 간주되											
	지 않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secondary 대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투자는 미국 외 지역에 설립된 미국 세법상 corporation											
	으로 설립한 단체(이하 "Non-U.S. Blocker")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II. 전제 사항

본건 투자에 대한 검토 의견을 귀사에 제공함에 있어 전제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건 역외펀드 / Brookfield Infrastructure Debt Fund III-B, L.P.(이하 "BIF III-B")는 케이만제도 세법상 exempted limited partnership으로 분류됨.
- US Blocker는 미국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미국 세법상 corporation으로 분류됨.
- Non-U.S. Blocker는 미국 외 지역에 설립된 단체로서 미국 세법상 corporation으로 분류됨.
- 본건 투자는 국내펀드가 시행한 최초이자 유일한 미국 투자로서, 국내펀드는 본건 투자 이외의 추가적인 미국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예정임.
- 국내펀드는 미국 및 기타 투자지국 내에 별도의 고정사업장을 형성하고 있지 않음.
- 국내펀드는 미국 세법상 corporation 으로 취급되기 위한 단체 분류(entity classification) 신고를 수행할 예정임.2

² 참고로, 기존 유사사례에서 현지 자문사로부터 확인받은 바에 따르면, 국내펀드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유한책임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기본적으로 미국 세법상 corporation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당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본건 투자의 경우 실제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미국 내 세금신고 의무 등이 국내펀드에게 부과되는 경우, 해당 의무가 국내펀드의 수익자에게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목적에 기반함.

III.검토 사항 요약

본건 투자의 경우, 국내펀드가 관련 소득을 수취 및 지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J.	무효과	비고							
미국	법인세 발생 가능	● BIF III-A 가 진행하게 되는 미국 내 primary 대출 투자의 경우 대출 실행(loan origination)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미국 세법상 국내펀드와 같은 Non-U.S. Investor 가 미국 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와 관련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이하 "ECI")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칙적으로 국내펀드에게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만약 (i) 국내펀드가 조세조약상의 거주자로서 미국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형성하지 않고, (ii) 국내 세법상 본건 역외펀드가 투과과세단체(transparent entity)로 취급되며, (iii) 한미조세조약상 본건 역외펀드를 통하여 지급되는 ECI 의 귀속 주체가 국내펀드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함(신고 의무는 존재). - 다만, (i)과 관련해서는 국내펀드 뿐만 아니라 펀드 수익자 단계에서의 미국 내 고정사업장 형성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국내펀드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 등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ii)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해당 국내 개정세법에 대한 판례 등이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iii)과 관련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상 상기와 같은 소득 취급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본건 역외펀드의 경우 ● 미국 내 투자와 관련하여 ECI 가 발생하더라도 US Blocker 단계에서 관련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 바, 결과적으로 국내펀드가 미국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세무효과	비고								
미국 원천세 발생 가능	● Secondary 대출 투자에 따라 Target 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미국 세법상 ECI로 간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 국내펀드가 동 소득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전제할 때, 12%의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본건 secondary 대출 투자에 대해 Non-U.S. Blocker 가 수취하는 미국 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해서 대부분 Portfolio Interest Exemption(*PIE**)이 적용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본건 역외펀드의 경우 ● Primary 대출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ECI로 취급되더라도, 동 소득은 1 차적으로 US Blocker에게 귀속되어 추후 배당의 형태로 본건 역외펀드에게 지급됨. 관련하여 국내펀드가 본건 역외펀드를 통하여 동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5%의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US Blocker 단계에서의 이자비용 발생을 통한 법인세 납부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본건 역외펀드가 US Blocker에게 별도의 shareholder debt 투자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US Blocker가 지급하는 이자 역시 미국원천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펀드가 동소득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상기와 같이 (i)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2% 제한세율에 따라원천세가 부과되거나,(ii) PIE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천세 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Secondary 대출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ECI로 취급되지 않는 이자소득은 국내펀드가 동소득을수취하는 과정에서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전제할 때, 12%의 제한세율에 따라원천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Non-U.S. Blocker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대부분 PIE이 적용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케이만 제도 법인세 및 원천세 없음	• 본건 역외펀드가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본건 역외펀드가 국 내펀드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에 대한 원천세 없음.								

세무효과							비고					
한국	법인세 발생	•	국내펀드 C 세액환급 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익자	단계에서	법인세	과세(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

변 본건 소득과 관련해서는 한미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는 바, 만약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30%의 세율로 원천세가 발생할 수도 있음.

B. 본건 소득에 대한 해외 세무효과 검토

I. 미국에서의 과세 관련

1. 법인세

- 미국 연방세법상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십의 경우 각 파트너가 직접 파트너십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됨. 즉, 파트너십의 파트너가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파트너십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파트너 역시 미국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또한, 이와 같이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사업활동 (US trade or business)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ECI로 분류되어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됨.
-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미국 세법상 파트너십으로 설립된 본건 역외펀드가 미국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국내펀드 역시 미국 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바, 해당 ECI에 대한 미국 법인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 한 이슈의 발생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건 미국 primary 대출 투자의 경우 대출실행(loan origination)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미국 세법상 국내 펀드와 같은 Non-U.S. Investor가 미국 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와 관련된 ECI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경우 각 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BIF III-A의 경우, 미국 내 primary 대출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 세법상 국내펀드가 미국 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해당 ECI를 직접 수취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원칙적으로 동 소득에 대한 국내펀드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국내펀드가 (i) 미국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형성하지 않고, (ii)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미국에서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신고 의무는 존재). 다만, (i)과 관련해서는 국내펀드뿐만 아니라 펀드 수익자 단계에서의 미국 내 고정사업장 형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ii)와 관련해서는 국내펀드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 등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3
- 본건 역외펀드의 경우, 미국 내 primary 대출 투자와 관련하여 구조상 미국에서 ECI가 발생하더라도 동 소득은 미국 세법상 법인(corporation)으로 설정된 US Blocker에게 귀속되어 해당 ECI에 대한 미국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US Blocker 단계에 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결론적으로 본건 투자과정에서 국내펀드가 미국 법인세 신고 관련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4

2. 원천세

●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는 미국원천배당 및 이자소득은 FDAP 소득5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³ 추가로, 국내펀드가 상기와 같은 소위 treaty position을 취하기 위해서는 (i) 국내 세법상 본건 역외펀드 / BIF III-A 가 모두 투과과세단체(transparent entity)로 간주되어야 하고, (ii) 이와 같이 투과과세단체를 통하여 지급되는 미국원천소득의 귀속 주체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펀드로 규정되어야 함. 다만, (i)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해당 국내 개정세법에 대한 판례 등이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또한 (ii)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상 상기와 같은 소득 취급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볼 때, treaty position을 취하는 것에 대한 제한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됨.

⁴ US Blocker는 미국 연방세법상 21%의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이자비용 등의 발생으로 인해 실제 납부 세액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임.

⁵ FDAP(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소득이란, 이자, 배당, 임대료, 연금 등 고정적이거나 확정 가능한 소득 및 기타 정기적인 소득을 의미함.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며, 이로써 모든 납세의무가 종료됨. 다만, 국내펀드가 미국원천 FDAP 소득을 수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세조약 등의 적용에 따라 상기 세율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는 바, 각 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⁶:

- BIF III-A의 경우, 미국 내 secondary 대출 투자와 관련하여 Target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국내펀드가 동 소득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면, 12%의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본건 secondary 대출 투자의 경우 Non-U.S. Blocker를 통해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Non-U.S. Blocker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대부분 미국 세법상 PIE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⁷ 해당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본건 역외펀드의 경우, 미국 내 primary 대출 투자와 관련하여 ECI로 취급되는 소득은 1차적으로 US Blocker에게 귀속되는 바, 동 소득은 추후 배당의 형태로 본건 역외펀드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펀드가 본건 역외펀드를 통하여 동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5%의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8

⁶ 참고로, 본건 역외펀드가 수취하게 되는 미국원천 FDAP 소득에 대해서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한국 세법상 본건 역외펀드가 투과과세 단체(transparent entity)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상기와 같이) 아직까지 해당 국내 개정세법에 대한 판례 등이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⁷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의 경우, 미국 세법상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PIE의 적용에 따라 미국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 동 규정은 해당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관련 이자소득이 ECI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가능함. 또한, (i) 해당 이자소득이 미국세법에서 정한 Registered Form에 따라 지급되어야 되고, (ii) 이자 지급인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로부터 그가 미국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iii) 해당 이자소득이 일정한 종류의 불확실한 이익(Contingent Interest)이 아니어야 하고, 또한 (iv) 특수관계인 및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가 아니어야 함.

⁸ 한편, US Blocker 단계에서의 이자비용 발생을 통한 법인세 납부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본건 역외펀드가 US Blocker에게 별도의 shareholder debt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US Blocker가 본건 역외펀드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역시 미국원천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국 내펀드가 동 소득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상기와 같이 (i)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2%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세가 부과되거나, 또는 (ii) PIE가 적

• 본건 역외펀드의 경우, 미국 내 secondary 대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Target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ECI로 취급되지 않는 소득은 국내펀드가 동 소득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면, 12%의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본건 secondary 대출 투자의 경우 Non-U.S. Blocker를 통해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Non-U.S. Blocker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대부분 미국 세법상 PIE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II. 케이만 제도에서의 과세 관련

1. 법인세

• 본건 역외펀드가 수취하는 해외 원천 배당 및 이자는 케이만 제도에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원천세

• 본건 역외펀드가 국내 펀드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에 대해 케이만 제도에서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III. 기타 투자지국에서의 과세 관련

• 본건 투자의 경우 각 거래 별로 투자 대상 국가 및 자산이 모두 상이한 바, 본건 역외펀드가 미국 외 지역에 소재한 Target 투자 와 관련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해당 투자지국의 세법에 따라 원천세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9

용되는 경우에는 원천세 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⁹ 본건 역외펀드는 미국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영국에 소재한 lending platform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상기와 같이, 기타 투자지국에서의 세무효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본건 역외펀드의 경우 (이익 회수 시) 투자지국에서의 원천세가 최소화되도록 운용될 것으로 예상됨.

C. 본건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이슈 검토

I. 국내펀드의 과세

• 법인세법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또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법인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4항). 따라서, 투자 신탁 단계에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수익자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가 이루어짐.

II. 국내펀드의 국내 외국납부세액환급 관련

• 법인세법 제5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신탁이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에 14%를 곱한 세액을 한도로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환급세액 =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10

(*) 외국납부세액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14%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됨(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 환급비율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 본건 투자의 경우, 국내펀드가 본건 역외펀드로부터 분배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직접 납부되는 세금이 발생할 경우, 국내펀드는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14%를 곱한 세액을 한도로 위에서 언급한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국

¹⁰ 환급비율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산정됨. 다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투자신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세대상소득금액 산정방식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라 환급비율이 1로 산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존재함.

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임.!!

• 한편,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환 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으로 부터 환급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8항 및 제9항).

III. 국내펀드가 국내 수익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단계

- 법인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에게 특정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u>지급액의 15.4%(지</u> 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 29 참조).¹²
- 여기서 '특정한 배당소득'이라 함은, 아래 요건을 갖춘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신탁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의미함(법인세법 제73조 제 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¹³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¹⁴ 참조).
 - (i)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 (ii)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quot; 최근 개정세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 제도가 폐지되고(법인세법 제57조의2 삭제), 대신 1) 투자신탁이 수익자인 내국법인에게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할 세액에서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고(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2) 투자신탁이 원천징 수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인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투자신탁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변경될 예정임(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후단 신설).

¹² 위 주석 11번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정세법에 따라 2023년부터는 국내 펀드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국내 펀드는 수익자인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 시 14%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봄)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3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함.

¹⁴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함.

- (iii) 금전으로 위탁 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 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¹⁵
-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지급액의 15.4%을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함. 그러나 실무적으로 그 수익자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분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특히 최근 유권해석(재법인-662, 2016.07.07)에서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에는 수익증권을 매도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하며, 결산분배 및 환매로 발생하는 이익은 제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펀드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수익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16
- 다만, 국내펀드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은 향후 자신이 부담할 법인세 산정 시, 국내에서 징수당한 원천징수세액 상 당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¹⁷

^{15 2020}년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득구분에 있어 금융투자소득(주식 채권 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신설되는 등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체계가 대폭 변경되는데, 이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특정한 배당소득의 범위가 달라지고, 본문에 열거된 특정한 배당소득에 관한 세 가지 요건 외에 '집합투자기구이익금과 분배금 및 유보금 내역 등을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는 바, 이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소득세법 제87조의 6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0조의 7 제2항).

¹⁶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지급액의 15.4%을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한 편, 관련 규정 및 기존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수익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지급액의 15.4%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나,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결산 분배 및 환매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재법인-662, 2016.07.07 참조). 한편, 위의 주석 11번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정세법에 따라 2023년부터는 국내 펀드가 금융기관에게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국내 펀드가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¹⁷ 현행 외국납부세액 환급 제도에서는 국외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펀드 단계에서 환급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은 분배 받은 국외투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됨. 반면에, 개정세법 하에서는 국내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부담하는 한편 내국법인에게는 국외투자소득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소득(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효과)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어 이중과세가 조정됨. 결과적으로 개정세법 하에서는 현행 환급 제도와 비교하여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가 일부만 제거되므로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